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광공업품 또는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, 광공업품의 제조 외에 개발·설계·설치·운영하는 자도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15조).
-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·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산업표준과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등에 따른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)
-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함(안 제20조제1항).
-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신설).
-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·교환·환급·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

21조의2 신설).

-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달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2조의2 신설)

II. 검토의견

1. 행정조사 범위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

- 안 제21조의3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¹⁾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불법 제품·서비스에 관한 정보 삭제·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런데 개정안의 자료제출 요청목적(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)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권한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²⁾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,
-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정보 삭제·접속차단 등의 조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1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함.

2)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(행정조사의 기본원칙)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5조(행정조사의 근거)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이에 산업통상부의 의견 및 유사 입법례³⁾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현행	개정안	개정안
<신설>	제21조의3(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	제21조의3(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, 제16조제3항, 제22조제4항, 제35조제1항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「전자상거

3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
2.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
- 2의2.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·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76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2.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약사법 제61조의2(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·광고 금지 등)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97조의3(과태료) ①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현행	개정안	개정안
	<u>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② <u>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·서비스의 온라인 유통·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 제품·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,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③ <u>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·절차,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</u>	<u>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개정안
제44조(과태료) <신설>	<u>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44조(과태료)	제4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① (생략)	① (생략)	1.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 2.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2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</u> ② (개정안 제1항과 같음) ② <u>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		

2. 전담기관의 사업 정비 등

- 안 제22조의2제2항의 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 전담기관 업무 중 제4호(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의 지원)는 전담기관의 기능과 점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담

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반영하여, ‘지원’을 삭제하였음.

-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의 위임·위탁 규정(제40조)에 전담기관을 추가함.

3. 그 밖의 사항

- 안 제2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의 조치 및 이행 주체를 ‘인증받은자’에서 ‘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’로 명확히 함.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문 표현을 수정하였고,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혜 진)